

6. 建設技術管理法施行規則中 改正令(案)立法豫告

建設部公告 第1993-13號 1993. 1.25

1. 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 1992년12월26일 공포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책임감리자의 자격기준 및 감리자의 상주방법을 정하고 기타 감리 회사의 등록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건설공사감리의 책임감리자를 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 10년 이상 근무하고 재단법인 한국건설기술교육원에서 3주이상 공사감리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거나 또는 국가·지방공무원 또는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사의 임직원으로서 공사감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자등으로 규정함으로써 책임감리자의 감리기술능력이 확보되도록 함.

나. 현재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게 되는 감리자수는 책임감리자를 포함하여 시공감리의 경우에는 3인이상, 전

면책임감리의 경우에는 5인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감리회사가 감리계약과 동시에 전체적인 감리자의 수와 공사진도에 따른 감리자의 배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케하여 발주관서의 장이 이를 조정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재의 경직된 감리자의 배치기준을 공사진도에 따라 감리회사 및 발주관서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감리회사의 등록시와 등록사항 변경시 대표자·임원의 이력서, 보유기술자중 고급기술자를 제외한 일반기술자의 이력서 및 신원증명서등 불필요한 구비서류의 제출을 간소화함으로써 행정간편화 및 민원소지를 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3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

를 세워서 작성)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부 기술감리담당관실(전화 503-73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 2백만호 앞당겨진 내집마련